농지전용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에 다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농지 전용』 콘텐츠는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와 같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농지 전용의 대상, 전용 방법 및 전용 절차와 전용한 농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농지전용부담금과 복구비용예치금, 그리고 불법 전용시의 제재까지 농지 전용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지전용 1
1. 농지전용 이해하기 4
1.1. 농지전용의 이해 4
1.1.1. 농지의 전용 4
2.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7
2.1. 농지전용허가 7
2.1.1. 농지전용허가 대상 및 제한 7
2.1.2. 농지전용허가 절차 9
2.2. 농지전용신고 11
2.2.1. 농지전용신고 대상 및 절차 11
2.3. 농지보전부담금 13
2.3.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13
2.3.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14
2.3.3.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등 16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19
3.1.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19
3.1.1.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9
3.1.2.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21
3.2.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복구 23
3.2.1.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23
3.2.2. 예치금 사용 및 반환 24
4. 농지전용 후 관리 26
4.1.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26
4.1.1.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26
4.1.2. 용도변경 승인 27
4.1.3. 지목(地目)변경 제한 28

1. 농지전용 이해하기

1.1. 농지전용의 이해

1.1.1. 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 다만, 전(田)·답(畓)·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7호 단서).

> ※ 농지개량의 범위
>
> -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6호의2).
>
>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 √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농지 전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261쪽).

행위		농지 전용행위 여부
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지에 부속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X (농지 이용행위)
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	X (농지 이용행위)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건물 등의 형태로 설치	o
농지의 이용행위로 허용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이 아닌, 벼 육묘 등을 위해 농지를 포장하는 녹화장을 단독적으로 설치		o
용도폐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o

> ※ 농지 및 농지의 소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농지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농지의 자경(自耕), 임대차 및 사용대차, 대리경작 등 농지의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농지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의 방법

▪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 참조).

구분	대상
농지전용허가	모든 농지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제외
농지전용신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 농지전용협의

- "농지전용협의"란 개발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농지전용 협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15쪽).

- 농지전용협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15쪽).

농지전용협의의 유형	대상
농지전용협의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일괄협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의제 협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시 농지전용허가 의제처리)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시 농지전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시 농지전용허가 등

- 농지전용협의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16쪽).

· 「농지법」에 따른 협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승인 등을 받았으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절차(허가·신고)를 거쳐야 함

· 농지전용협의를 한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등 협의 조건을 이행해야 농지전용허가·협의의 효력이 발생함

농지전용 관련 처분 등에 대한 불복

▪ 농지전용과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예: 농지전용 불허가처분, 원상회복명령 등) 또는 부작위(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3조 참조).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 2018. 11. 2., 자, 2018마5608, 결정)

판례는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알림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므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2.1. 농지전용허가

2.1.1. 농지전용허가 대상 및 제한

농지전용허가 대상

농지전용허가의 대상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 제51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Q. 전용허가 받은 농지가 토지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지번만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의 대상인가요?
>
> A. 교환, 합병 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부지 지번만 바뀌었을 경우에도 향후 지번 미수정으로 인해 불법전용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73쪽]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7조제1항 본문).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7조제1항 단서).

-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7조제2항).
  -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제43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60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이며,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
  - 농촌특화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위반 시 제재

벌칙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1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2항).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5항).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7항).

2.1.2. 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전용의 허가권자

▪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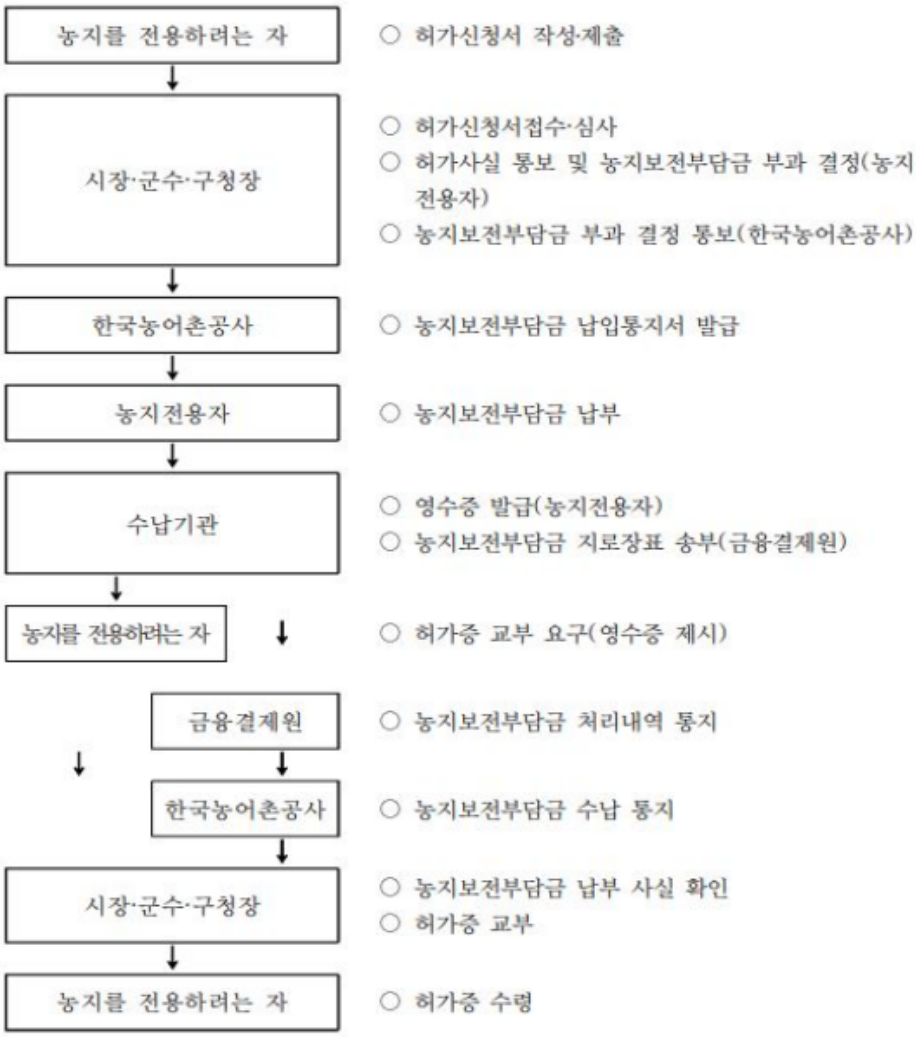
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구청장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의 농지	-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농지가 걸치는 경우	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농지가 동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

* 다만, 계획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과 자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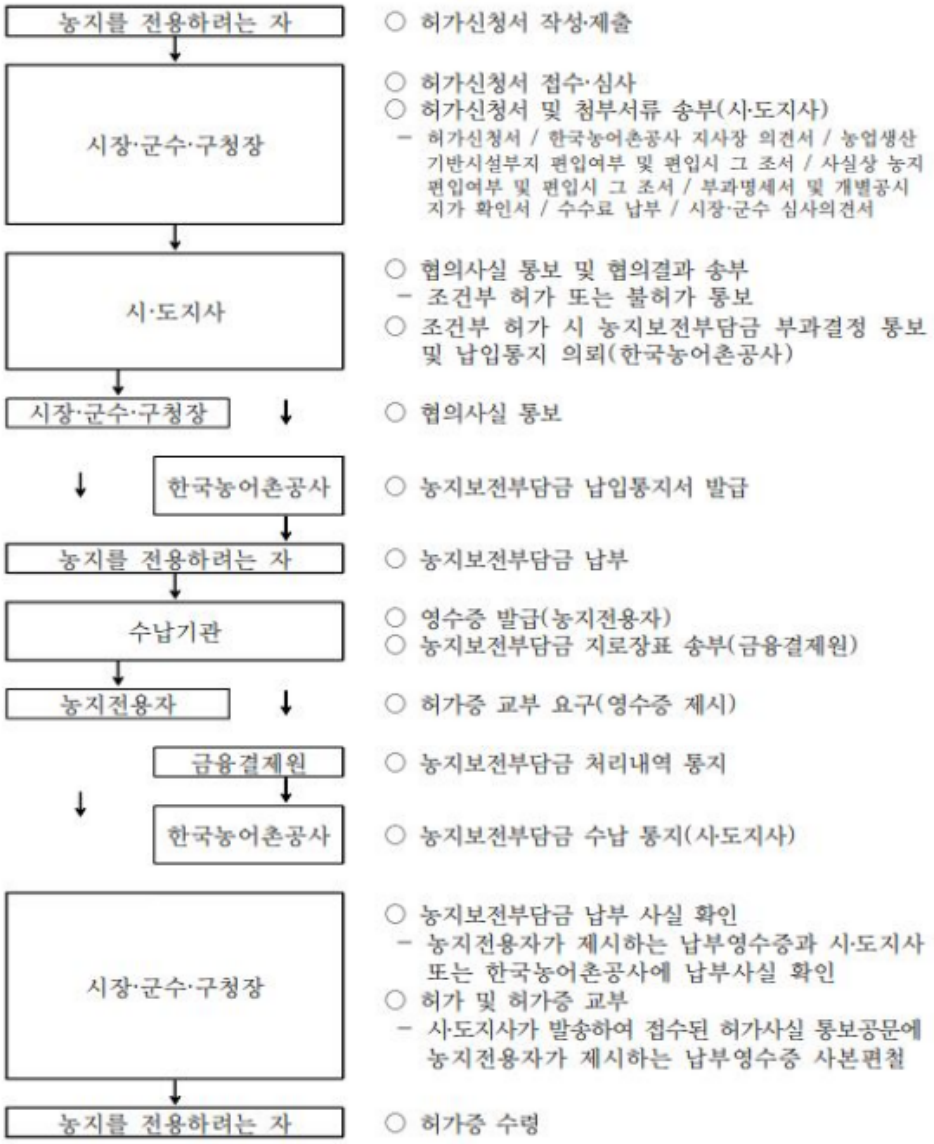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269~270쪽).

<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인 경우 >



<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농지전용신고

2.2.1. 농지전용신고 대상 및 절차

농지전용신고 대상

농지전용신고의 대상 시설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전단).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후단).

Q. 농업용 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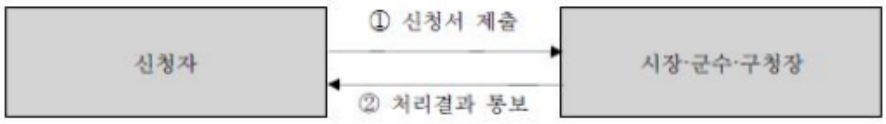
A.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은 7,000㎡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이하)까지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54쪽]

농지전용신고 절차

농지전용신고의 절차

▪ 농지전용신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58쪽).



위반 시 제재

벌칙

▪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0조제2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제2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5항).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7항).

2.3. 농지보전부담금

2.3.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을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항, 제51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Q. 농지전용 허가받은 1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
> A. 농지전용 허가받은 1개의 필지를 분할하여 2개의 필지로 변경하는 경우 전용된 농지의 면적, 경계, 위치 및 감면요건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사항도 변경되지 않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각각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통해 기존 허가면적을 분할된 필지만큼 축소하고 축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는 신규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216쪽]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다음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100분의 30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7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항·제4항)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농지법」 제38조제7항제1호)
-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농지법」 제38조제7항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1호)
  - √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날
  - √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 √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한 날(「농지법」 제38조제7항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농지법」 제38조제7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농지법」 제38조제7항제4호)

▪ 위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3.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절차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의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함)으로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농지보전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통지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를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4항).

▪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1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내역, 온라인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공간포털(https://njy.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분할납부의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관광시설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의 방법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본문).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3항 본문).

▹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3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후단).

2.3.3.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등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환급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농지법」 제38조제5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Q. 지적 재조사로 인해 농지전용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하나요?
>
> A. 지적재조사로 인해 농지의 면적·경계가 변경된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할 면적이 늘어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한 경우 해당 면적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214쪽]

환급 절차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461쪽).

부담금 환급 사유 발생 (관할청)	▪ 「농지법」 제38조제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 환급 사유 √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부담금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농지전용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 결정 및 내역 통보 (관할청→한국농어촌공사, 환급대상자)	▪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 √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 원상회복 확인 후 결정 √ 환급대상자, 사유, 허가면적, 소재지, 목적, 산출내역 등을 작성하여 통지
⇩	
환급금 청구 (환급대상자→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제출 서류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한국농어촌공사→환급대상자)	▪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 지급 후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 통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6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농지법」 제35조제1항)

> ※ 농지보전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가산금의 부과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농지법」 제38조제9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이 위의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되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10항 전단).

  ▹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0항 후단).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11항).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1.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3.1.1.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및 제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대상 및 기간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기간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	15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년
3. 골재, 광물,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5년 이내	3년
4.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5년 이내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 과수, 에너지 및 공조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을 갖출 것	7년 이내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 후단).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2항).

> **Q.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를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
> A.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제도는 농지를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원래 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식량생산의 기반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는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90쪽]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제한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타용도 일시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함)
-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 및 결정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벌칙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2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5항).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7항).

3.1.2.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및 기간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대상

▪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

-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음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2항).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농지의 사용기간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절차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신청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함)
-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심사 및 결정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심사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검토 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가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4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4항 및 별지 제27호의4서식).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

벌칙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0조제3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제2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5항).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7항).

3.2.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복구

3.2.1.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3항 전단, 제36조의2제3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 다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3항 후단 및 제36조의2제3항 후단).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함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4항).

복구비용의 납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후단).

3.2.2. 예치금 사용 및 반환

복구비용예치금 사용 및 반환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함. 이하 "복구의무자"라고 함)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지 않으면 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시장·군수등은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전단).

-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 그 외의 경우: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 발행자에게 반환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

▪ 시장·군수등은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30호서식).

- 복구비용예치증서
-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시장·군수등은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 Q.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농지로 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
> A.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즉시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에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복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85쪽]

4. 농지전용 후 관리

4.1.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4.1.1.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9조제1항 본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9조제1항 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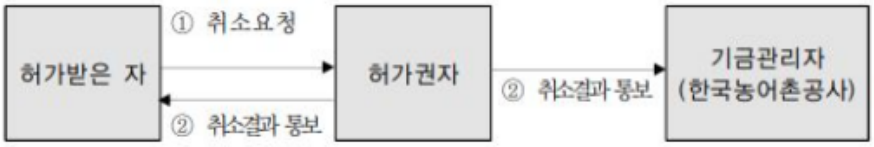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9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농지법」 제39조제2항 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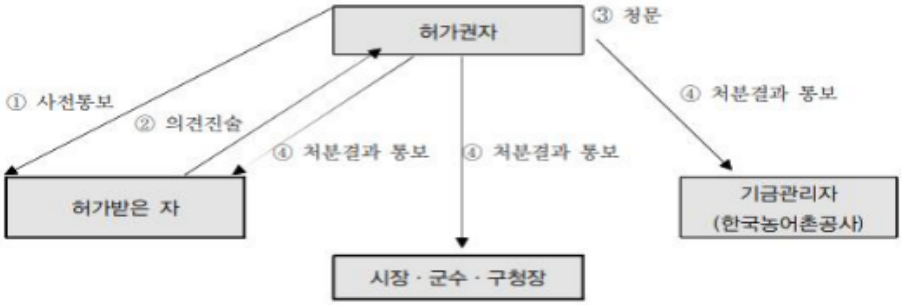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절차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81~382쪽).

< 허가를 받은 자가 원하여 허가취소 하는 경우 >



<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



허가취소 등에 따른 조치

▪ 관할청은 허가의 취소·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농지법」 제39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제6항).

- 농지의 표시
-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4.1.2. 용도변경 승인

용도변경 승인

용도변경 승인의 대상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전용신고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위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본문).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농지법」 제44조제3항)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다만,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토지는 위 3.의 경우에 한정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단서).

Q.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나요?

A.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63쪽]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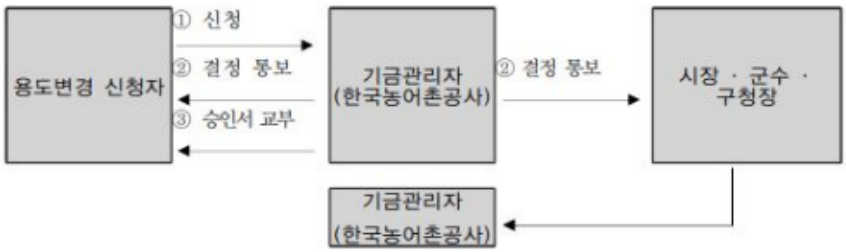
▪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2항).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농지보전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승인의 절차

▪ 용도변경 승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85쪽).



위반 시 제재

▪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3호).

4.1.3. 지목(地目)변경 제한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田)·답(畓)·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41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농지법」 제34조제1항제4호)하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 토지소유자는 위의 사유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완료·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1조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거짓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0호마목).

▪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지법」 제64조제2항제1호).